

순천대학교 교원업적물 심사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 2. 29. 개정 2013. 03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교원의 신규채용, 승진, 재임용(계약), 정년보장, 성과급 지급, 성과연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실적물을 심사하기 위한 순천대학교 교원업적물심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제출된 실적물의 인정 여부
2. 제출된 실적물의 세부 구분
3.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.

③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총장은 필요한 경우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실기실적 소위원회) ① 위원장은 예능계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실기실적 소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13. 03. 01)

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예능계열 교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인문예술대학장이 된다. (개정 2013. 03. 01)

③ 위원은 인문예술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3. 03. 01)

제5조(임기)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실무간사로 한다.

제7조(적합성심사) ① 적합성 심사는 논문 및 저서의 인정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 및 계열별 위원 1명으로 심사한다. (개정 2013.03.01)

② 적합성심사 결과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한다. (개정 2013.03.01)

③ (삭제 2013.03.01)

④ 각 계열은 순천대학교 교원성과급적연봉제 운영지침을 따른다.(개정 2013.03.01)

제8조 (삭제2013. 03. 01)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(2012. 2. 29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연구실적물심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2013. 3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